

# 항공우주정책연구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항공우주정책연구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항공우주정책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고 한다)

라 하고, 영문으로는 Korea Aerospace Policy Research Institute (약칭 KAPRI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항공운송산업 발전 방향 및 정책 연구
2.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향 및 정책 연구
3. 해외 항공산업 동향 조사, 연구
4. 동 분야의 연구발표회, 세미나 개최
5. 동 분야의 산학협동연구, 위탁연구, 과제 연구 등 수행
6. 타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
7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, 연구지원실, 연구센터를 둔다.

제5조(임원 및 임무)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인, 부소장 1인,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.

- ① 연구소장 및 부소장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통괄한다.
- ③ 부소장은 연구지원실장을 겸임하며,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통괄한다.
- ④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본 연구소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6조(연구실) 본 연구소에는 소정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연구센터를 둔다. 연구센터장은 책임연구원 이상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, 연구센터의 설치와 폐지 및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운영위원

회의 심의에 따라 연구소장이 결정한다.

- ① 연구소는 전문 분야별로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센터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각 연구센터의 연구 활동을 주관한다.
- ③ 연구지원실: 연구소 운영관리의 세부사안, 연구소의 중장기 연구사업 기획 및 홍보, 대외 협력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연구원) 본 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연구위원을 두고 필요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1.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2.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3. 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박사과정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4. 연구보조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석사과정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5.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외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제8조(자문위원) 본 연구소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, 연구소장, 부소장, 연구센터장으로 구성되며, 연구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- ② 연구과제의 선정
- ③ 연구계획, 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, 평가
- ④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⑤ 기타 연구소 운영상의 중요 사항

제11조(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3 장 재 정

제12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수입금, 대학에서 책정한 연구소 예산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연구비지급 및 관리) 연구비 운영 및 관리 규정은 대학의 규정에 준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5조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 4 장 기 타

제16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